모아엠피 윤리강령

제정 2026 년 11 월 24 일 · 시행 2026 년 11 월 24 일

모아엠피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진단검사 분야의 의료기기·시약 공급자로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긴다. 회사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금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일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정한다.

제 1 조 (목적과 적용 범위)

이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정규직·계약직·파견 등 고용형태를 묻지 않는다)에게 적용하며, 회사는 협력사와 거래처에도 이 강령의 취지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 2 조 (법규 준수)

1.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업무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지킨다.
2. 의료기관·의료인 등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한다. 법령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제공하고 법령에 따라 기록·보관한다.
3.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UDI) 등 품목 추적 관리 의무를 지킨다.

제 3 조 (부패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선물, 접대,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거래 획득이나 유지를 목적으로 고객, 공무원, 협력사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선물·식사·접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금품·선물·접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4 조 (공정한 거래)

1. 거래처와 협력사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2. 담합, 허위·과장 광고, 부당한 거래 거절 등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 조 (이해상충 방지)

임직원은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가족·지인 업체와의 거래, 거래처 겸직·지분 보유 등)이 생기면 즉시 윤리경영 관리자에게 알리고 그 업무에서 빠진다.

제 6 조 (정보 보호와 정확한 기록)

1. 고객과 환자,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업무 목적 외에 쓰지 않는다.
2. 회계와 거래 기록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 7 조 (임직원 존중)

회사는 인종, 성별, 나이, 출신,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없는 일터를 만든다. 세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 8 조 (안전과 환경)

회사는 유해화학물질 등 취급 품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운반·판매하고, 임직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 9 조 (윤리경영 책임자와 관리자)

1. 대표이사를 윤리경영 책임자로 한다. 책임자는 윤리경영 방침을 정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2. 윤리경영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업무를 맡긴다: 강령과 지침의 운영, 선물·접대 신고 접수와 대장 관리, 제보 접수와 조사, 연 1 회 이상 임직원 윤리교육, 연 1 회 운영 점검과 대표이사 보고.
3. 책임자와 관리자는 별표의 지정 내용에 따르며, 변경되면 사내에 공지한다.

제 10 조 (제보와 제보자 보호)

1. 누구든지 이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윤리경영 관리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름을 적지 않은 익명 제보도 받는다.
2.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비밀로 하며, 제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제보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징계,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으며, 보복한 사람은 징계한다.
4. 제보는 접수 → 사실 조사 → 조치 → 제보자에게 결과 안내의 순서로 처리하고, 처리 내용을 제보 처리 대장에 기록한다.

제 11 조 (교육과 서약)

회사는 임직원에게 연 1 회 이상 윤리·반부패 교육을 하고, 신규 입사자는 입사 시 교육한다. 임직원은 윤리실천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 12 조 (위반 시 조치)

이 강령과 관리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법령 위반이 있으면 관계 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13 조 (공개)

이 강령은 사내 게시판과 공유폴더에 게시하여 임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하며,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26 년 11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윤리경영 책임자·관리자 지정

구분	직위	성명	제보 접수
윤리경영 책임자	대표이사	문영희	
윤리경영 관리자	팀장	최삼진	서면 제출
제보 방법	—	—	서면 제출 (회사 주소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익명 가능)

2026 년 11 월 24 일

모아엠피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영 희　(인)